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시/장소	2024. 3. 21.(목), 14:00 /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사업명	가양동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3BL 개발사업(보고)		
신청위치	강서구 가양동 63-1번지 일원		
의결번호	(구조)2024-3-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p>[심의 내용] 구조안전</p> <p>■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p> <p><구조안전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계산서 건물개요의 건물규모가 오기 되었으므로 수정하고, 내진철근을 사용해야 하는 부재를 구분하여 표기바람.(구조도면 구조일반사항 구조개요에도 표기바람) ○ 구조안전확인서에서 내진설계범주를 구조계산서와 동일하게 수정하기 바람. 기초설계 시 지내력기초와 파일기초를 사용하였으므로 구조안전확인서와 구조도면 구조일반사항에 지내력기초와 파일기초를 함께 표기하기 바람. ○ 최상층 및 지붕층은 용도 구분하여 설계하중을 작성하기 바람.(일반, 조경, 태양광, 냉각탑 등) ○ 지하주차장은 운행되는 차량을 확인하여 활하중을 정리하기 바람.(지하1, 2, 3층 층고 7.0m임) ○ 3BL은 기초가 지상1층, 지하1, 2, 4, 5층에 형성됨. 지상1층 바닥과 지하1층 바닥의 기초에만 파일기초를 적용함. 지하2층 바닥에 기초 설치되는 구간은 표기한 기초하부 지내력 확보가 어려워 보이므로 지하2층 바닥에서 필요한 설계지내력 확인하고 기초형식 검토바람. ○ 플랫슬래브는 건축구조기준(KDS 14 20 70 4.1.5.4 보가 없는 슬래브의 철근상세) [그림 4.1-1 보가 없는 슬래브]을 참고하여 주열대 하부철근은 스패 내에서 100%가 연속되도록 배근하고, 주열대 상부보강근의 길이는 0.2ln 이상이 되도록 배근하기 바람. ○ 지식산업센터 외부발코니 단차상세(캔틸레버구간, 오픈구간, 비오픈구간 등)는 스케일에 맞춰 상세도 작성하고 구조도면에 추가하기 바람. 외부 발코니쪽 전 			

- 단보강근은 배치되는 곳을 명확하게 도면에 표기하기 바람.
- 기둥부호가 지하5층 구조평면도에만 표기됨. 전이되는 기둥들과 지하5층까지 설치되지 않고 상부에서 기초가 형성되는 기둥들은 기둥부호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도면을 보완하기 바람.
 - A동 저층부 지상2~5층 바닥는 슬래브 끝선(구조체)이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을 명확히 정리하기 바람. 마감선과 구조체선, 오픈구간과 슬래브 설치구간 등을 건축평단면에 명확히 정리하여 구조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하기 바람. Y25~26열구간이 구조체로 연결된 다면 이 구간의 구조계획 필요함.
 - A동과 C동, A동과 1블럭, B동과 2블럭의 각각의 지상연결통로가 E.J.로 연결된 다면 구조평면도에 EJ구간을 표기하기 바람.
 - 기준층평면도에서 텐던과 보강근 배치의 방향 고려하여 슬래브의 기본배근 방향이 변경되는 배근 변경라인을 구조설계자가 제시하기 바람.(A동-1, B동)
 - 구조계산서 벽체일람표에서 ‘기둥식 배근 적용’ 표기가 구조도면에서는 누락됨. 벽체일람표에 추가하고 기둥식 배근 상세 작성하기 바람.
 - Y19~Y20/Z14~Z15 지상1층 바닥이하 DA로 슬래브 오픈됨. 지하외벽 지지하던 버트레스 역할을 하는 벽체가 지하5층 기계실에서 없어짐. 이에 대한 구조계획 검토바람.
 - 기준층 플랫플레이트 응력검토시 적용된 하중조합은 허용응력설계와 극한강도설계 각각의 응력검토 DATA를 제시하고 3D모델링에 적용된 횡력에 의한 하중조합이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기 바람.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는 A, B, C동 각각 구분하여 작성 바람.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에서 고유치해석 결과 중 질량참여율은 방향 (X, Y, RZ)도 함께 표기 바람.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의 풍하중, 지진하중 및 고유치해석 결과가 “구조심의 발표자료” 및 “구조계산서” 와 일치하도록 수정 바람.
 - 상시유입량 저감공법 채택과 관련하여 경제성 외에 구조적, 내구적 특성 비교를 통한 선정 근거 제시 바람.
 - 굴착 시 발생 가능한 인근 건물과의 구조 안전성 관련 계측 계획 제시 바람
 - ACT 충전 콘크리트의 충전도에 따른 부재이음부의 좌굴 및 채움확인 관련 사항 제시 바람.
 - A슬래브 배근도는 텐던 배치뿐 아니라 철근배근의 변경라인을 제시하기 바람.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동조 제7항에 따라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행하기 바람. 끝.

2024. 3. 2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